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광 주 고 등 법 원

제 주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redacted])2020누1553 경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구합5308 판결

변 론 종 결 2021. 2. 17.

판 결 선 고 2021. 3.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redacted]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2011. 11. 9. 구 [redacted]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2항에 따라 C 주식회사가 2012. 12.경까지 전문휴양업 등록 및 영위를 예정하여 투자하는 [redacted]시 B 외 15필지 413,612㎡를 [redacted]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사건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하는 내용의 'D리조트 조성사업 [redacted]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를 하였다.

나. C 주식회사는 위 사업을 위해 2012. 3. 24. [redacted]시 F 외 5필지 83,842㎡ 및 그 지상 건물 19,627.87㎡(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구 [redacted]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2013. 1. 16. [redacted]특별자치도조례 제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감면 조례'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다.

다. 그 후 원고가 2013. 10. 2. C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라. 도지사는 2차례(2015. 11. 4.~2016. 5. 2. 및 2016. 5. 3.~2016. 10. 30.)에 걸친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회복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인 '전문휴양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2016. 11. 24.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1. 25. 피고에게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과 수영장 시설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갖추어 관광진흥법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전문휴양업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2. 23. 수영장 시설은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에 포함되는 필수시설이므로 전문휴양업 등록을 위해서는 숙박시설 이외에 별도의 전문휴양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도지사는 위 전문휴양업 등록신청 거부 처분이 있었던 2017. 2. 23. 원고가 사업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당초 지정기준인 전문휴양업 등록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이 사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바. 1) 원고는 2017.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감면받았던 취득세,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에 근거한 것),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 4. 6.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4. 19.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인정하였으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와 관련해서는 '■■투자진흥지구 해제에 따른 원고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은 개정된 ■■■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24조의3이 적용되는데, 위 조항에 따르면 추징기간이 5년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그 기간 내에 원고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28. 기각되었다.

사. 1)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를 이유로 2017.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산세 합계 572,131,320원 및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0조 제6호에 근거한 것) 합계 114,455,650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17. 6. 30. 위 금액을 납부한 후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8. 12. 28. '이 사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 조세심판원이 감액경정하고 남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내역은 별지1 '재산세 부과처분 내역'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 각 처분과 관련한 납세의무는 그 추징사유인 이 사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일인 2017. 2. 23. 성립한 것으로서, 일반적 경과규정인 [redacted]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부칙(2015. 12. 31. [redacted]특별자치도조례 제1526호) 제3조가 적용되지 않아 개정 전 감면 조례 제24조 제3항을 위 각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redacted]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2015. 12. 31. [redacted]특별자치도조례 제1526호로 개정되고 2017. 8. 9. [redacted]특별자치도조례 제1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처분시 감면 조례'라 한다) 제24조의3에서 정한 면제세액의 추징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나아가 개정 전 감면 조례 제24조 제3항에 따라 면제된 세액의 추징에 적용되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제1항은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7 제1항 제1호는 [redacted]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원인으로 이전에 면제되었던 취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추징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동안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1조의1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면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그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는데, 기존 처분사유인 '이 사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와 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용될 수도 없다.

4. 판단

가.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처분사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던 것은 개정 전 감면 조례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이 사건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기인하였던 사실, 그 후 원고는 2017. 3. 위와 같이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납부서의 각 '과세대상'란에는 부동산 표시 옆에 "추징(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7. 4. 6. 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고에게 이 사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로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로 인하여 감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개정 전 감면 조례에서 정한 감면 세액의 추징 근거규정이 조례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처분 시 감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령의 소급적용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서에도 이 사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로 인한 감면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임을 전제로 처분 시 감면 조례가 적용되어 경정을 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각 심판청구 사건에서도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면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그 처분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의 근거 법령 및 적법성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하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8399 판결 등 참조),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 즉 과세요건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등 참조). 한편, 추징은 일단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에 당초의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516 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1) 개정 전 감면 조례 제24조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1호 및 처분 시 감면 조례 제24조의3 제1항 제1호는 모두 [redacted]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redacted]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로 인해 면제된 취득세, 재산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지사가 2017. 3. 23. 위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이 사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면제받았던 취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원고의 납세의무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됨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하고,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시행되던 처분 시 감면 조례가 적용된다.

(2) 한편, 개정 전 감면 조례 제24조가 2015. 12. 31. [redacted]특별자치도조례 제1526호로 삭제되고, 처분 시 감면 조례 제24조의2가 개정되면서 제24조의3이 신설되었는데, [redacted]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다만 일정한 요건이 발생한 경우 면제 세액을 추징하도록 개정 전후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였던 점, 개정 전 감면 조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추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던 반면, 처분 시 감면 조례는 지방세에 속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추징 규정을 신설하고 국세에 속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와 관세에 대한 추징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도록 하여 그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진흥지구 지정 당시 원고가 면제받은 취득세 등에 대해 처분 시 감면 조례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진흥지구 지정 당시 취득세 등의 면제의 근거 규정은 개정 전 감면 조례 제24조 제1항이므로, '처분 시 감면 조례 제24조의2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처분 시 감면 조례 제24조의3 제1항이 이 사건에 당연히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나친 문언적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redacted]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에 따라 감면된 세액 추징과 관련하여 처분 시 감면 조례 제24조의3 제2항 제1호는 '지정해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여, 개정 전 감면 조례 제24조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6조의17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추징대상 기간인 '지정해제일부터 소급하여 3년'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일인 2017. 3. 23. 성립한 반면, 위와 같은 처분 시 조례의 개정은 2015. 12. 31. 이루어졌던 점, 이 사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은 2012. 12.경까지 원고의 투자 및 전문휴양업 등록을 그 요건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2016년 말까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도지사가 이 사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투자진흥지구 지정 당시 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redacted]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될 수 있음이 함께 고시되어, 원고도 [redacted]투자진흥지구 해제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정 전 조례에서 규정한 추징대상 기간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하나의 유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개정 전 감면 조례에 따른 추징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이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처분 시 감면 조례 제24조의3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처분 시 감면 조례 제24조의3에 따라 이 사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그 법적 근거를 흠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와 같이 '이 사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이 법원에서의 처분사유 추가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별지1]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단위: 원)

처분일	과세원인	경정청구액	
		취득세	지방교육세
2017. 4. 19.	건축(원시취득)	2,360,872,430	134,906,990
	지목변경	145,974,600	-
합계		**2,506,847,030**	**134,906,990**

재산세 부과처분 내역 (처분일 : 2017. 6. 12.)

1. 토지분

(단위: 원)

귀속연도	과세대상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소재지	면적			
2014	[] 외 18 건	410,829.2 ㎡	90,510,710	18,102,140	108,612,850
2015	[] 외 13 건	408,242.1 ㎡	105,228,110	21,045,620	126,273,730
2016	[] 외 12 건	405,739.8 ㎡	112,767,800	22,553,560	135,321,360
합계			**308,506,620**	**61,701,320**	**370,207,940**

2. 건축물분

(단위: 원)

귀속연도	과세대상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2014	[] []호	26,083,600	5,216,290	31,299,890
2015	[] []호	26,043,210	5,208,070	31,251,280
2016	[] []호	25,856,160	5,170,950	31,027,110
합계		**77,982,970**	**15,595,310**	**93,578,2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별지2]

관계 법령

■ 구 [redacted]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redacted]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redacted]자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226조에 따른 [redacted]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redacted]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주요사업내용

■ [redacted]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162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redacted]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2013. 1. 16. [redacted]특별자치도조례 제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 12. 31. [redacted]특별자치도조례 제1526호로 개정되고 2017. 8. 9. [redacted]특별자치도조례 제1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redacted]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redacted]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redacted]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시	**제24조의2([redacted]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업을 위한 감면)** ① 특별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redacted]투자진흥지구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사업을 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행령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시설을 새로 이 설치하는 투자에 한한다)에 직접 사용(「관광진흥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되는 재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redacted]특별자치도세를 면제한다. 1. 취득세 면제 2.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면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제1항 각 호를 적용하고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7을 적용한다.	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건축물은 새로이 건축하는 시설에 한하며,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와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 [redacted]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제24조의3([redacted]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면제세액의 추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2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redacted]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redacted]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 제2호의 경우: 지정해제일, 입주허가 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액 추징 **부칙(제1526호, 2015. 12. 3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redacted]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redacted]투자진흥지구 또는 [redacted]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redacted]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redacted]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사업용 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매각한 경우	**제121조의12([redacted]투자진흥지구 또는 [redacted]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1.「[redacted]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redacted]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삭제 <2015.12.1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redacted]투자진흥지구 또는 [redacted]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제116조의17([redacted]투자진흥지구 또는 [redacted]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12 제1항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삭제 <2016.2.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2.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 **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끝.